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 일부개정)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나.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1)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 1)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
- 2)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2.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진술권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처분권자는 법 제7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말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진술권 포기서”를 각각 “출석 진술 포기서”로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제2호 개정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별지제2호의3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직위(직급)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귀하

자 르 는 선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직위(직급)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개시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등의 요구 및 그 밖에 징계등 절차 진행의 중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 의 결정) (생략)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 의 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에게 징 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 계등 절차의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으 로 한다.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 ② (생략)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 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 는 <u>진술권포기서</u> 를 제출하게 하 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 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 ----- ----- -- <u>출석 진술 포기서</u>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 ⑦ (생략)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위원회는 징계등 처분을 하 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 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처분등) ① · ② (생략)	제19조(징계처분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7
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
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과 같음)

③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
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
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
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 대통
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말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
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와 「공공기관의

④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한다)

⑤ 처분권자는 법 제75조제2항

--.

⑥ 제5항-----

-----.

⑦ ----- 제6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434